

## 독 촉 장

납부의무자	사업체명	대표자명
	소재지	

체 납 금 액 명 세						
구 분		체 납 내 역				
연 도	기 분	부 담 금	가 산 금	연 체 금	그 밖의 징수금	합 계
총 계						

1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체납금액을 독촉 하오니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까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(은행,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 등)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(www.giro.or.kr) 또는 온라인 국고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.
2. 연체금(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)을 납부할 때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(http://www.esingo.or.kr)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일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○○○○○○○장

직인